

거래가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매입가격 신고 토지						
	지번	지목	면적(㎡)	매입가격(원)	매입처	매입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 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